

(검토보고서-참조2)

#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2003. 7. 9

## 1. 제안사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(2003.6.17)이 의결 이송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조직과 직무의 범위가 일부 조정되는 것이 확실함.
-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중 “경제통상국”을 “재정경제국”으로 하고 “성남시환경녹지사업소”를 “성남시도시정비사업소”로 하며, “성남시디자인사업소”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 임.

## 3. 검토의견

- 동 조례를 개정하여 성남시의회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으로
- 위헌·위법등 상위법과의 상충문제,주민의 기본적인 권리나 의무와의 관계,재원,재정적인 문제등을 검토하였으나 큰 문제점이 없는 바람직한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.